



## 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

1. 관련: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.

2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다시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4.2.15.(목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\* 입법예고 기간: '24.2.8.~'24.2.15.

(부서명, 담당자, 연락처)

개정안	수정안	사유

3. 아울러 동 입법예고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.

- 붙임 1.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1부.  
 2.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.  
 3.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. 끝.

#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9부), 중앙행정기관(19청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4처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 시도 방역부서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농림축산검역본부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관련 협회



주무관 이민희 서기관 박경일 방역정책과장 이동식 전결 2024. 2. 8.

협조자

시행 방역정책과-945 (2024. 2. 8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520 팩스번호 044-868-0628 / [lmh5124@korea.kr](mailto:lmh5124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